

대법원 2020. 4. 9 선고 2019다3860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4. 9 선고 2019다38604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9. 10. 10 선고 2019나590 판결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A

피고, 상고인B

판결 선고 2020. 4. 9.

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. 10. 10. 선고 2019나590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피고가

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 노태악

대법관 김재형

주심대법관 민유숙

대법관 이동원